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8. 11. 9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8. 11. 9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1998. 11. 13

○ 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98. 11. 1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가. 제안이유

-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을 현실과 부합하도록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대상 사업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수익사업을 추가하고
- 유사기능을 가진 경영수익사업기획단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규정 개정

나. 주요골자

- 경영수익사업의 심의(안 제5조)
 - 현행 : 경영수익사업기획단(미구성)
 - 개정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 경영수익사업기획단 폐지

○ 경영수익대상사업 확대(안 제6조)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p>○ 조례 제2조(경영수익사업)중 "채산성이 확실 하고"의 의미는?</p> <p>○ 조례 제9조(회계공무원)제1항제2호 기금운임 운용관이 경영수입업무담당주사, 제3호 기금 출납원이 경영수익업무담당을 경영수익업무 담당 및 경영수익업무담당실무자로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p>	<p>○ 채산성이 확실하면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뜻합니다.</p> <p>○ 네, 맞습니다.</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요지

○ 개정안 제5조 및 제6조를 통합하자는 수정안에 반대하는 소수의견 있었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의안번호	제 60 호
의결년월일	98. 11. 14 (제66회)

제안년월일 : 1998. 11. 13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 제6조(대상사업) 제5항 및 제6항을 통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 조례제정시 잘못 제정된 제9조(회계공무원) 제1항제2호 및 제3호 기금특별회계 운용관의 명칭을 수정함.

2. 주요골자

○ 개정(안)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통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하며 안 제9조제1항제2호를 "경영수익업무담당"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3호를 "경영수익업무담당실무자"로 함.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7호를 제6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제9조제1항제2호중 "경영수익업무담당주사"를 "경영수익업무담당"으로 하고 동조 제1항제3호중 "경영수익업무담당"을 "경영수익업무담당실무자"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경영수익사업) 이 조례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 함은 부천시경영수익사업기획단(이하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이라 한다)에 서 협의 선정된 사업으로서 실행가능성과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지대한 사업을 말한다.	제2조(경영수익사업)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	제2조(경영수익사업) (개정안과같음)
제5조(경영수익사업기획단의 구성 등) ①투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조(경영수익사업의 심의) 투 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지방재정계획	제5조(경영수익사업의 심의)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p>② <u>경영수익사업기획단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u></p> <p>③ <u>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영수익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세입업무 담당과장, 회계업무 담당과장, 부천시의회 의원 2인,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교수 및 전문가 3인으로 한다.</u></p> <p>④ <u>경영수익사업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u> 2. <u>경영수익사업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3. <u>회계 및 사업관리 방식에 관한 사항</u> 4. <u>투자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u> 5. <u>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u> 6. <u>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⑤ <u>경영수익사업기획단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u>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한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u> 2. <u>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3. <u>회계 및 사업관리 방식에 관한 사항</u> 4. <u>투자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u> 5. <u>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u> 6. <u>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수정안포함】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부천시경영수익사업기획단(이하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이라 한다)에서”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경영수익사업의 심의) 투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한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회계 및 사업관리방식에 관한 사항
4. 투자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5.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제7조중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의”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의”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경영수익사업기획단에서”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경영수익업무담당주사”를 “경영수익업무담당”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중 “경영수익업무담당”을 “경영수익업무담당실무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시장과 경영수익사업기획단에”를 “시장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대상사업) (생략)	제6조(대상사업) (현행과 같음)	제6조(대상사업) (개정안과 같음)
1.~4.(생략)	1.~4. (현행과 같음)	1.~4.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5. <u>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u>	5. <u>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u>
(신설)	6. <u>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u>	6. (개정안과 같음)
5. (생략) 제7조(대상사업선정) 대상사업 선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u>경영수익사업기획단</u> 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7. (현행 제5호와 같음) 제7조(대상사업선정) <u>제5조의 규정에 의한</u>	제7조(대상사업선정) (개정안과 같음)
제8조(투자기금의 운용계획) ① 투자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u>경영수익사업기획단</u>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기금의 운용계획) ① <u>제5조의 규정에 의한</u>	제8조(투자기금의 운용계획) (개정안과 같음)
②(생략) 1~2(생략) 3. <u>경영수익사업기획단</u> 에서 협의선정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②(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u>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생략)	①(현행과 같음)	①(개정안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기금분입운용관 : <u>경영수익업무담당주사</u>	2. (현행과 같음)	2. ... : 경영수익업무담당
3. 기금출납원 : <u>경영수익업무담당</u>	3. (현행과 같음)	3. ... : 경영수익업무담당 실무자

현행	개정안	수정안
<p>②(생략)</p> <p>제11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 관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지침에 의거 전년 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u>시장</u> 과 <u>경영수익사업기획단</u>에 보 고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②(현행과 같음)</p> <p>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u>시장</u> <u>에게</u></p> <p>②(현행과 같음)</p>	<p>②(개정안과 같음)</p> <p>제11조(결산 및 보고) (개정 안과 같음)</p>